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예산처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확대(안 제34조의3)

현행 자본금의 30%로 제한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자본금의 100%로 확대하여 다양한 자금 유입 및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을 기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중 “30”을 “10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u>30</u> 을 말한다.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 ----- <u>100</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연락처	044-214-3337